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특약 무효화〉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31호)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35호)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98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김상훈의원안	1
II. 윤한홍의원안	2
III. 이강일의원안	3
IV. 검토의견	5
1. 부당특약 무효화	5
2.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12

I. 김상훈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II. 윤한홍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한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Ⅲ. 이강일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9.
3. 회 부 일 : 2024. 9.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하도급대금 중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급 사업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및 제3조제2항3호, 제3조의4제3항 신설 등).

IV. 검토의견

1. 부당특약 무효화

□ 김상훈·이강일의원안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¹⁾(이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의4제2항 각 호의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 한편, 윤한홍의원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제2항 각 호의 약정 중 그 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현 행	김상훈·이강일의원안	윤한홍의원안
제3조의4(부당한 특 약의 금지)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의4(부당한 특 약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u>	제3조의4(부당한 특 약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 사자 일방에게 현 저히 불공정한 경 우 그 부분에 한정 하여 무효로 한다.</u>

- 현행 제3조의4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조의4제2항은 계약조건 내용 중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참고자료 참조: 「부당특약 고시」)

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 다만, 현행은 원사업자가 현행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바, 수급사업자는 계약내용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개정안들은 현행 제3조의4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경우 부당한 특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를 판단²⁾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재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산상·노무상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무효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수행이 용이함.

□ 한편, 윤한홍의원안은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³⁾ 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⑦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내용과 유사함.

□ 최근 법원은 「건설산업 기본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⁴⁾ 특히 법원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제1항이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변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법률에 의해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부산고등법원 2023.11.29. 선고 2023나50434 판결(대법원 2024.4.4. 선고 2023다313913: 상고기각)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추어지는 사이에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였는데, 수급인인 피고 B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인 B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것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나, 범위 제한 없이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경우 그로 인해 일부 거래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입법례처럼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법 및 시행령과 부당특약 고시는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효력을 모두 무효화하는 경우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그 피해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당사자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당특약을 무효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방지가 필요하며, 부당한 특약은 그 자체로서 현저한 불공정이 존재하므로 모든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참고: 「부당특약 고시」

II.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이강일의원안)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이강일의원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⑯ -----“주요 재료비등”이란----- -----원재료비 및 경비(「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비용을 말한다)로서----- -----비용을-----.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⑰ -----주요 재료비등인----- ----- -----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u>원재료</u>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 <u>재료비</u> <u>등</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 현행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정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은 원가계산에 의해 정해지며 제조원가·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의미함.⁵⁾ 이 때 재료비는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하며, 경비에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송비 등이 포함됨.⁶⁾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및 운송비를 포함한 공급원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5)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업체 간 계약에 기반을 둔 거래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조정·변경을 강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그 결정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⁷⁾에 따라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요금이 결정·조정된다는 특성이 있음. 즉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감염병의 확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 수급상황 변동으로 인해 등락하는 원자재 가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운송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2호⁸⁾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기초로 화물운송 운임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재료비와 같이 수급상황의 변동 또는 물가변동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에 따른 월 단위 차주원가>

(단위: 원)

품목	고정원가 ¹⁾	변동원가 ²⁾	합계
철강재	2,816,465	4,645,565	7,462,030
1톤 일반형 화물차	885,970	990,701	1,876,671
5톤 일반형 화물차	1,376,378	2,310,314	3,686,692
12톤 일반형 화물차	2,310,980	3,698,103	600,083
25톤 일반형 화물차	2,618,685	5,043,930	7,662,615

1)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2)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
장안착을 우선하고 향후 도입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하
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의 추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